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제출연월일 : 2025. 4.

제 출 자 : 정 부

재의요구이유 및 주요내용

2025년 3월 21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별지에 기재된 이유로 그 내용대로 공포하기 곤란하다고 판단되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하려는 것임.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의요구서

2025년 3월 21일 국회에서 정부로 이송된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하여 정부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 제2항에 따라 국회에 재의를 요구합니다.

이 유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정부도 일반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에 확고한 의지를 가지고 일관되게 노력하여 왔고, 주주이익의 보호라는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하 “이 법률안”이라 함)의 기본 취지에는 깊이 공감합니다.

이 법률안은 이사가 회사의 경영의사결정 과정에서 지배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취지로 이해됩니다.

그러나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문언이 불명확하고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모든 법인에 대해 이사의 모든 행위를 규율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개별 사안별로 어떠한 의사결정을 하는 것이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모호하여 불필요한 혼란과 비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이로 인해 이 법률안은 상법의 체계 정합성을 저해할 뿐 아니라, 주주이익의 보호라는 개정 취지에도 맞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나라의 기업 지배구조 현실, 경영상 의사결정에 대한 보완장치의 필요성, 중소기업의 부담 증가 우려 등 제반 상황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최근 고금리·고물가·고환율의 삼중고와 미국의 관세정책 등 대외 환경의 급격한 변화로 인해 국민경제와 기업환경에 중대한 불확실성이 발생한 상황에서 주식회사의 경영을 담당하는 이사로 하여금 회사 및 각 주주들에 대해 불명확한 의무와 책임을 추가 부담시킬 경우 소극 경영으로 이어져 기업은 물론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이 훼손될 우려가 있습니다.

나아가 이사가 의무를 부담하는 상대방에 회사와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한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에 대해서는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법원행정처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사와 주주 관계의 본질적 변화이므로 신중하게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취지의 우려를 표시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다수의 소수주주가 있는 주권 상장법인의 합병 등 자본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대안을 2024년 12월 2일 발표하였고, 이러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6175, 윤한홍 의원 대표발의, 이하 “자본시장법 개정안”이라 함)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회에서 위와 같은 대안을 포함하여 심도 있는 논의가 다시 이루어질 필요가 있습니다.

이 법률안의 구체적인 문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불명확성 때문에 주주 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 회사의 주인이 주주라는 점은 상식이고, 일반적으로 회사와 전체로서의 주주의 이익은 일치합니다.

○ 그런데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회사와 주주의 이익이 상충하는 예외적인 상황을 오히려 기본 전제로 두고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괄적이고 불명확하게 규정하여 경영진에게 불확실성을 초래하는 심각한 부작용이 우려됩니다.

○ 또한 이사회에게는 주주 간 복잡한 이해관계를 조정할 권한이 없고 이사회는 주주총회가 의사결정 권한을 가지고 있는 주요사항에 관한 안건을 주주총회에 상정할 뿐인데, 이사회에게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부담시키는 포괄적 규정을 신설할 경우 오히려 이사는 이해관계가 상이한 여러 개별주주에게 부담하는 의무가 서로 충돌하는 ‘의무의 충돌’ 상황에 빠지게 되어 이사회의 기능을 약화시키고 소극 경영에 머무르게 할 우려가 있습니다.

○ 특히 이해관계가 상이한 개별주주에 대한 ‘의무의 충돌’이 발생하게 되면 이사의 면책기준이 불명확하게 됩니다. 불명확한 기준 때문에 경영진을 불안에 떨게 하고, 정작 투자자에게 필요한 구제를 적시에

제공하지 못하는 선언적 규정이 될 수 있습니다.

- 나아가 경영진이 소수주주의 피해에도 불구하고 지배주주의 의사에 부합하는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오히려 ‘다수 주주의 이익’을 이유로 경영진을 면책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여지도 있습니다.
- 이러한 이 법률안의 불확실성과 상징성은 자본력을 가진 투기적 세력이 단기이익을 목적으로 국내 기업을 공격할 때 ‘비대칭 전략무기’가 될 수 있습니다. 즉 다른 나라에 없는 불명확성을 이용해 우리 기업 경영진에 대한 소송을 남발하여 단기적 이익을 위한 요구만 관철하는 도구로 활용될 수 있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2.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이사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문을 상법 체계에 맞지 않고 불명확하게 개정하는 것으로 중대한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습니다.

- 상법은 여러 경제법령의 기초가 되는 기본법이므로 체계 정합성이 확보되어야 합니다. 이사의 의무 규정은 이사의 민사상·형사상 책임의 근거가 되는 중요한 조문이므로 체계 정합성이 특히 중요합니다.
- 종래 상법은 대륙법계 체계에 따라 이사와 회사 간의 법률관계를 위임계약으로 설정하고 있고 회사와 이사라는 당사자의 의사의 합치를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에서는 이사의 의무 상대방에 회사 뿐 아니라 위임계약 관계가 없는 주주를 병렬적으로 규정하고 있어 우리나라의 상법 체계에 비추어 볼 때 이질적입니다.
- 그리고 해당 규정에 대해서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문위원도 이사에 대해 직접 계약관계가 없는 상대방에 대해 충실의무를 부과하는 것은 위임계약의 구조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하였습니다.¹⁾
- 법원행정처 역시 이사가 주주에 대해 직접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이 법률안에 대해 현행 회사법 체계와 이질적인 부분이 있고 이사의 형사책임과도 관련될 수 있으므로 주주를 충실의무의 대상에 추가하는 입법방식에 대해서는 추가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²⁾
- 또한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2항에서는 이사에 대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할 의무와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회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총주주”와 “전체 주주”의 개념이 명확하지 않아 해석상 논란을 초래할 우려가 제기되었습니다.³⁾
- 이사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는 불문법 국가인 미국에서 법원이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사건에서 구체적 타당성을 기하면서 형성해

1)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2200144 정준호의원 대표발의, 의안번호 2200457 박주민의원 대표발의 등)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검토보고서 6면 및 7면 참고

2) 2025년 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81면 등 참고

3) 2025년 1월 22일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록 91면 등 참고

온 판례법상의 법리입니다. 그러나 미국에서도 이 법률안과 같이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를 포괄적으로 창설하는 성문법 규정은 드물고, 포괄적인 규정을 둔다고 하여 미국 판례법상의 주주에 대한 충실의무 법리가 그대로 도입되는 것도 아닙니다.

- 이사의 충실의무 규정은 이사에 대한 민사상·형사상 책임 추궁의 근거 규정으로 기능하는 매우 중요하고 근본적인 조문임에도 불구하고 이 법률안과 같이 상법의 체계에 맞지 않고 불명확하게 개정할 경우 해석상의 혼란과 법적 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습니다.

3.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헌법상 명확성 원칙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위와 같이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회사 및 각 주주간의 이해가 상충되는 상황에서 이사가 부담해야 하는 의무의 내용이 지나치게 포괄적이어서 이사의 의무를 둘러싼 법률관계를 불명확하게 하므로 헌법상 명확성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법률안에 대한 대안으로서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을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적용 범위를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주로 나타났던 주권상장법인의 합병과 물적분할 등으로 명확히 특정하여 마련한 대안입니다.
- 이러한 대안에 비추어 볼 때, 포괄적이고 내용도 모호한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수단의 적합성, 법익 균형성 및 피해의 최소성을 결여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위반될 소지가 있습니다.

4. 정부가 2024년 12월 대안을 제시하였으나 입법 과정에서 충분한 협의 및 사회적 공감대 형성이 부족했던 문제가 있습니다.

- 상법은 경제에 관한 기본법으로 개별 기업의 경영환경은 물론 국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므로 충분한 협의와 사회적 공감대를 바탕으로 입법이 추진되어야 합니다.
- 정부는 2024년 12월 2일 주권상장법인이 합병 등 자본거래를 하는 경우 그 이사회가 합병 등의 목적, 기대효과, 가액의 공정성 등에 대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공시하는 등 주주의 정당한 이익이 보호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점을 명시하는 등의 방안을 골자로 하는 ‘일반주주 이익 보호 강화를 위한 자본시장법 개정방향’을 발표하였고, 그 발표 내용이 반영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었습니다.

- 이처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우선적으로 개정하여 주권상장법인 중심으로 일반주주를 보호하고 기업의 지배구조가 개선되는 관행이 정착되고, 관련 판례도 축적된 후 단계적으로 적용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것이 이 법률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이므로 우리나라의 현실에 더욱 적합할 것입니다.
- 그런데 정부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를 대상으로 지속적으로 설명하고 소통하는 노력을 하였으나, 자본시장법 개정안은 아직 국회 정무위원회 심사 단계에 머물러 있는바, 충분한 검토와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이 법률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된 것입니다.
- 따라서 이 법률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에 대해 다시 한 번 심도 있는 협의와 검토를 거쳐 입법 취지를 명확히 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법을 찾을 필요가 있습니다.

5. 결론

-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주주이익 보호라는 이 법률안의 입법 취지에 반대하는 것은 아니며, 정부는 주주이익 보호를 위해 여러 가지 제도를 개선해온 바 있습니다. 주주가 배당액을 알고 투자를 결정할 수 있도록 상장법인의 배당절차를 개선하였고, 주식회사 물적분할

반대주주 보호를 강화하였으며, 주식회사 인적분할의 경우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을 제한하는 등의 조치가 이미 시행되었습니다.

- 그뿐만 아니라,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에 대한 대안으로 기업지배구조 관련 문제가 주로 나타났던 주권상장법인의 합병, 물적분할 등으로 적용범위를 명확히 특정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이미 국회에 발의되어 있습니다.
- 그런데 이 법률안은 기업환경과 국민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률안임에도 불구하고 제시된 대안에 대한 충분한 검토와 협의 없이 처리되었습니다.
- 이 법률안 제382조의3제1항 및 제2항은 불명확성 때문에 주주이익의 보호에는 기여하지 못하면서 우리나라 기업환경을 악화시키고 국민경제의 성장동력을 저해할 우려가 있고, 상법의 체계에도 맞지 않아 사회적 혼란과 국민경제에 피해를 초래할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이러한 문제점들은 학계와 관계 기관·단체 등이 국회의 법률안 심사과정에서 반복적으로 지적한 사항입니다.
- 대내외 경제여건이 도전적인 상황에서 기업 경영활동을 위축시키지 않으면서도 주주 보호와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달성하기 위해 이 법률안과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할 필요가 있어 「대한민국헌법」 제53조제2항에 따라 이 법률안에 대해 재의를 요구합니다.

법률 제 호

상법 일부개정법률안

상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64조의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 중 “總會는 定款에 다른 定함이”를 “총회는 정관에서 달리 정한 바가”로, “本店所在地 또는 이에 隣接한 地에 召集하여야”를 “본점소재지나 인접한 곳에 소집하여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64조(소집지와 개최방식)

- ② 회사는 총회일에 주주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으로 총회를 개최한다.

제382조의3 조 번호 및 제목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 같은 조 제1항(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82조의3(이사의 충실의무 등)

- ①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 및 주주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 ② 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여야

하고,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여야 한다.

제3편 제4장 제13절에 제542조의14 및 제542조의1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42조의14(전자주주총회) ①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결의로 주주의 일부가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할 수 있는 방식의 총회(이하 “전자주주총회”라 한다)를 개최할 수 있다.

② 자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여야 한다.

③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는 소집지에 직접 출석하는 방식과 전자통신수단에 의하여 출석하는 방식 중 어느 한 가지 방식에 의하여만 총회에 출석할 수 있다.

④ 전자주주총회에 출석한 주주 등은 제364조에 따른 소집지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장회사가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제363조제1항에 따른 소집통지에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한다는 뜻과 출석방법,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⑥ 제1항과 제5항에 따른 전자통신수단, 전자주주총회 개최요건,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42조의15(전자주주총회의 운영 등) ① 상장회사가 제542조의14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개최하는 경우 주주가 총회의 의사 진행 및

결의에 실시간으로 참가할 수 있도록 총회를 적정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② 상장회사는 전자주주총회의 운영의 효율성 및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를 관리하는 기관을 지정하여 전자주주총회의 의사진행 및 결의에 참가하는 절차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전자주주총회 관리기관 및 그 임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정보로서 외부에 공개되지 아니한 정보를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④ 상장회사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주주총회의 개최에 관한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⑤ 상장회사는 제4항에 따른 기록을 총회가 끝난 날부터 3개월간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하고 주주는 영업시간 내에 기록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⑥ 주주의 질의 방법 및 절차, 의장의 의사진행 등 전자주주총회의 운영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